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데이터센터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7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데이터센터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2

I. 제안경위

2026년 6월 16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데이터센터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물 사용 효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보 미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6조의8제3항·제4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를 작성·공 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 보.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 경정보는 제외한다. 2. 물 사용 효율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방법, 내용 및-----

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 -----.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1. 제16조의8제1항 및 제3항을-----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녹색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 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¹⁾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0(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시·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최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대규모 수자원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에 대응하여, 관련 시설의 환경정보 및 물 사용 효율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2)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운영·관리자에게 환경정보(제2항 각 호) 및 물 사용 효율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데이터센터의 물 관리에 대한 환경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임.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16조의8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16조의8제1항 각호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16조의8제1항 각 호는 환경정보공개 의무 기업을 열거하고 있고, 동 조항을 인용하여 제2항에서는 공개 의무 환경정보를 규정하고 있음.³⁾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16조의8제1항 각 호에 ‘데이터센터 등’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별도 제3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항의 신설 대신 현행법 제16조의8제1항에 호를 추가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기후부의 수정의견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다른 공공기관·대기업과 동일한 공개 의무를 지게 되어 법체계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별도로 규정한 ‘물 사용 효율 정보’ 공개 의무가 담보될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환경정보공개 의무 기업을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 대상이 광범위해 보임.

현행법상 의무 기업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과 같이 자산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에 비하여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등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규모 데이터센터나 기타 데이터센터 외 타 시설도 환경
정보공개 의무기업에 포함되어 기업들에게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
므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에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